

현행	개정안	개정내용~
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~ ⑤ (생략) ⑥ "판정"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	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~ ⑤ (생략) ⑥ '판정'이라 함은 총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.	교육부 훈령 개정 반영 (결과통보 주체 변경)
제9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 1.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.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.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	제9조(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) ②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. 1. 제보 내용이 제4조 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.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(삭제)	교육부 훈령 개정 반영
제16조(판정)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16조(조사결과의 확정)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. ② (현행 유지)	교육부 훈령에 맞추어 결과통보의 주체 변경
제17조(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.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6. (생략)	제17조(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) ① 조사위원회는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(이하 "최종보고서"라 한다.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현행 유지) ③ 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후, 총장이 '판정'한다.	제16조 변경에 따라 "판정"을 "결과확정"으로 용어변경 제16조 변경에 따라 결과통보절차 명시
<u><신설></u>	제18조(이의신청)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	교육부 규훈령 및 미래부 규칙에 따라 이의신청 신설
제18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)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,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19조(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) ①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,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 ② (현행 유지)	제18조 추가에 따라 지원기관 보고서점 수정
<u><신설></u>	부칙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	